



(auri)



No. 40

2015.12.30

한옥정책 브리프 hanok policy brief

「한옥건축기준」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

이강민 국가한옥센터장, 이세진 연구원

■ 요약

-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한옥건축 지원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한옥의 형태·재료·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
- 한옥건축기준은 한옥 건축과 관련하여 공공성의 영역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, 현대한옥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통건축양식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한, 누구나 쉽게 이해·활용 가능한 건축기준으로 구성됨
- 한옥을 주요구조부(제4조), 지붕(제5조), 외벽 및 창호(제6조), 설비(제7조), 마당 및 담장(제8조)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준을 제시함

■ 기대효과

- 관계법령 적용 및 한옥건축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운영 시 공정성 제고 및 효율성 증대
-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·경관적 특성을 반영한 한옥건축기준의 고도화 전략 모색 및 지역별 한옥진흥정책의 다양화 유도
-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기준의 운용실무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조건과 다양한 건축실험의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현대한옥의 미래상의 방향 제시

1. 「한옥건축기준」의 제정배경 및 목적

■ 제정배경

- 한옥건축 관련 지원정책의 공통 기준 부재
 -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 관련 지원조례(51개 지자체),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지구 단위계획(서울 북촌, 경복궁 서측, 돈화문로, 인사동,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등 5개)을 바탕으로 한옥의 건축 및 대수선 행위를 정책적으로 지원 및 규제중(2015.12.기준)
 - 그러나 공통되고 구체적인 기준의 부재에 따른 한옥건축위원회 재심의율 증가와 민원 발생 등 관련 정책의 비효율적 운영의 문제가 일부 제기되기도 함
- 이와 관련하여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)」 제27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한옥의 성능, 재료,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

제27조(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)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1. 한옥의 성능, 재료, 형태 등에 관한 사항
2. 한옥마을의 규모, 밀도, 도로·공공공간·건축물 등의 배치와 경관 등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

■ 기본방향

- 건축물의 공공성의 영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최소기준 마련
 - 한옥 정책이 규제가 아닌 진흥을 목표로 작동할 수 있도록, 건축물의 공공성의 영역에 집중하여 최소한의 기준 정립
 - 한옥 고유의 건축특징을 반영하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되,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이 각각 다른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·경관별 특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핵심요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과 열린 기준 마련
- 현대한옥의 다양한 발전양상을 고려한 전통건축양식의 창조적 계승
 - 신기술 개발 및 적용 추이를 반영하고, 현대한옥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, 전통건축양식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건축기준 마련

※ 이 글은 이강민 외(2015), 「한옥건축기준 안내서」 중 일부를 요약 및 재구성한 것임

-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옥건축기준 제시
 - 관계부처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, 한옥 건축주, 건축가, 시공자, 관심 있는 일반인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설정

■ 적용대상 및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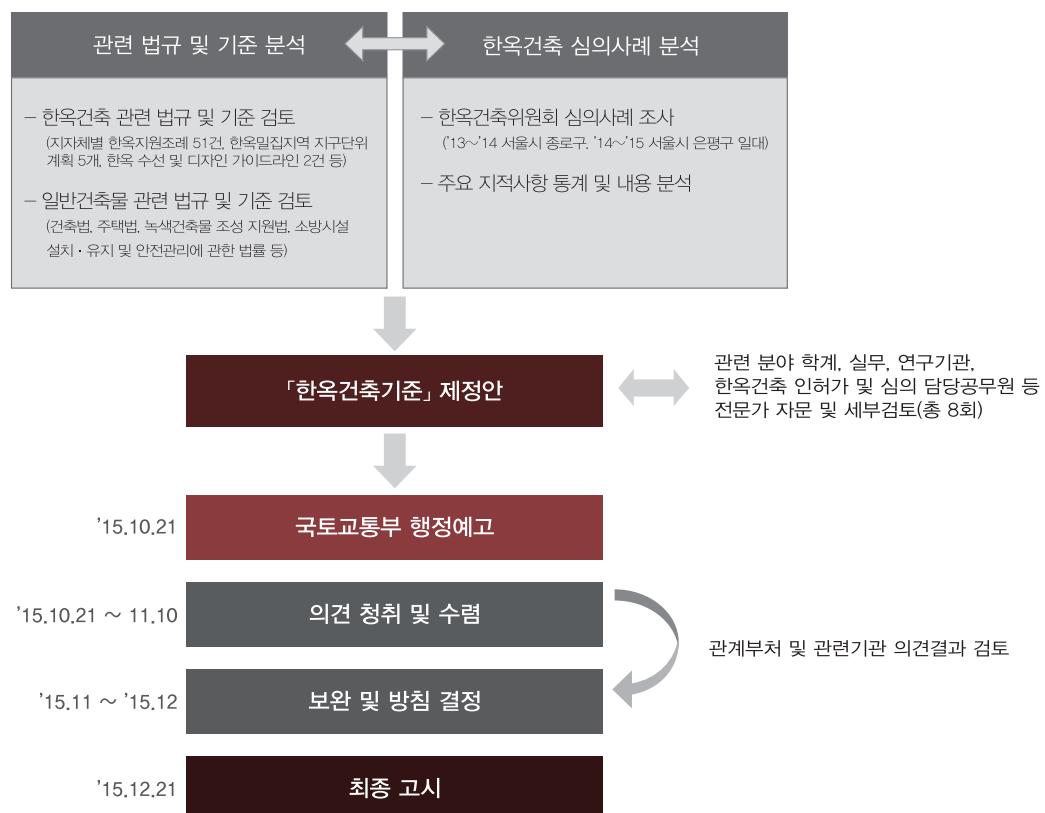
- 학술적 목적이 아닌 정책대상으로서 한옥에 대한 건축기준
 - 본 건축기준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「건축법」 제2조에 따라 건축 및 대수선하고자 할 때, 건축자산으로서 기술적·재정적 지원(제24조)을 받거나 특례 적용(제26조)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함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"한옥"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·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.

■ 「한옥건축기준」 제정을 위한 추진경위

그림 1. 「한옥건축기준」 제정을 위한 추진경위



2. 「한옥건축기준」의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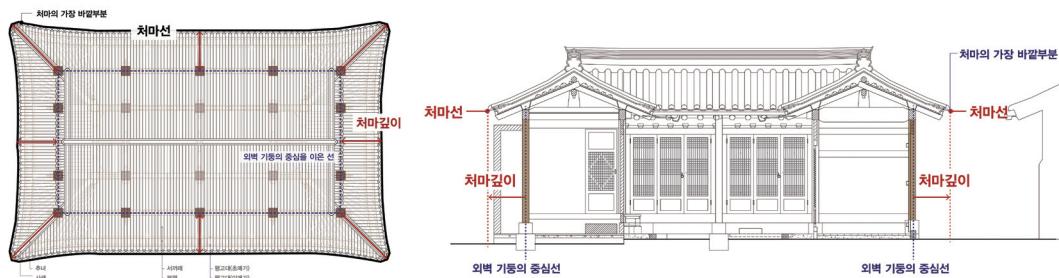
■ 용어의 정의

- (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) 한식지붕틀, 처마선, 처마깊이에 대한 법적 정의 마련
 -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한옥의 지붕과 처마는 가로경관 차원에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며, 고유의 전통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주요 요소
 - 지붕 부위에서 ‘한식지붕틀, 처마선, 처마깊이’ 등의 용어는 기존의 한옥관련 조례 및 기준에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나, 통일된 법적 정의의 부재로 혼선을 야기
 - 이를 해소하고자 본 기준에서는 관련 법규, 학계 및 설계현장,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의
 - 단, 한옥은 지붕의 특징에 따라 제각각 입체적인 모습을 띠는 점을 고려하여, 구체적인 부재의 치수 및 접합방식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를 남겨둠

표 1. 관련 용어의 정의

| 용어 | 정의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한식지붕틀 | 보, 도리, 서까래의 순서로 시공되는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지붕구조 |
| 처마선 | 처마의 가장 바깥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선 |
| 처마깊이 | 외벽 기둥들의 중심을 이은 선으로부터 처마선에 이르는 수평거리 |

그림 2. 처마선 및 처마깊이의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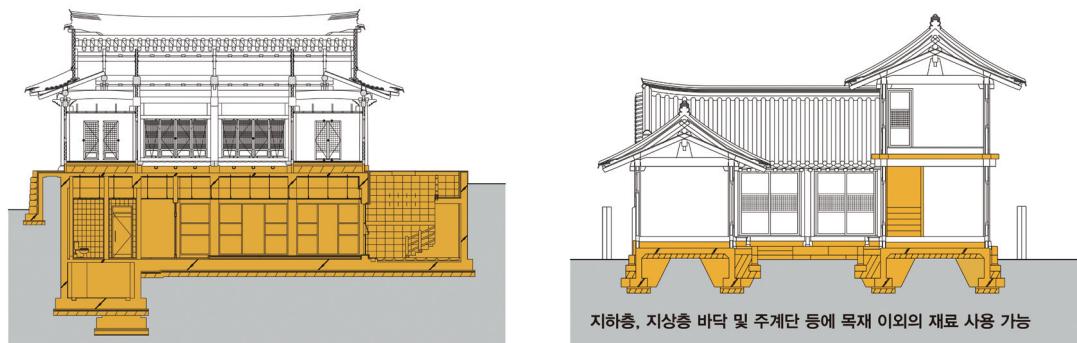


■ 주요구조부의 건축기준

- (제4조제1호) 바닥 및 주계단을 제외한 지상층의 주요구조부에 목재 사용 원칙
 - 한옥은 목구조 건축물로, 기둥 및 한식지붕틀 등의 구조부재에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함

- 그러나 최근에는 처마내밀기 등의 건축특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한옥의 내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지하층을 두거나 2층으로 건축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, 지하층을 포함한 모든 구조부재에 목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
- 본 기준에서는 현대한옥의 다양한 디자인 가능성을 고려하여, 지하층, 지상층의 바닥 및 주계단 등에 목재 이외의 재료사용을 허용하도록 함

그림 3. 주요구조부의 재료 대체 허용기준



- (제4조제2호) 일부 구조부재에 목재 이외의 재료사용 허용

- 최근에는 현대생활의 다변화된 용도 및 공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일부 구조부재를 목재 이외의 재료로 대체하는 복합구조(Hybrid structure) 및 합성구조(Composite structure)¹ 한옥건축과 관련한 기술 및 공법이 개발·시도되고 있음
- 본 기준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일부 구조부재에 목재 이외의 재료사용을 허용하도록 함
- 단, 하나의 공간(間)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구조부재의 개수(기둥, 보, 도리의 총합 13개)를 기준으로 다양한 평면구성 및 디자인의 가능성을 고려, 15%정도 가산하여 총 15개 이내로 한정하되, 그 수가 전체 구조부재 수의 절반은 초과할 수 없도록 최대 범위를 규제함

¹ 복합구조 및 합성구조란,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이질적인 재료의 구조부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, 한옥에서 일부 기둥 및 도리 등을 철골조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

그림 4. 철골프레임 목재의 마감공법 개발사례 및 한옥건축사례



출처: (주)창의건설

표 2. 구조부재에서 목재 이외의 재료 사용에 대한 허용범위 산정 시뮬레이션

| | 5량가 ^{*1} | 3량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
| 구조부재 [*] (단위 : 개) | | |
| 합계 | 13 | 9 |
| 기둥 | 4 | 4 |
| 보 | 4 | 2 |
| 도리 | 5 | 3 |

* 구조부재의 개수는 기둥 간격을 기준으로 산정

*1 퇴칸을 두는 경우, 경간을 넓혀 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주를 삭제할 것으로 예상하고 구조부재 산정

■ 지붕의 건축기준

- (제5조제1호) 지붕에 기와를 얹을 경우, 암·수키와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 사용 원칙
 - 암·수키와로 구성된 전통기와의 형태는 빗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하여 목재의 부식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, 한옥 조형의 핵심요소로 기능함
 - 최근에는 경제성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기와의 경량화·일체화 등 다양한 재료 및 접합기술이 개발되고 있음
 - 이에 따라 기와지붕의 경우 반드시 암·수키와 한 쌍이 이루는 고유의 형태와 크기를 유지하되, 재료와 공법에 대해서는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

그림 5. 현대 한식기와 개발사례



경량신소재 기와
출처: 한옥기술개발연구단(2013)

일체형 기와
출처: 전라남도청(2013)

- (제5조제2호) 최소 처마깊이 90센티미터 이상

- 길게 돌출된 한옥의 처마는 고유한 미학적 특징에 더해 실내공간의 일사조절 및 낙수 물로 인한 목재의 부식방지 등의 환경적·구조적 성능측면에서도 중요한 특징적 요소
- 그러나 대지가 좁은 도심지역에서는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처마깊이마저 지켜지지 않아 고유의 비례미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구조적 안전성능조차 위협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
-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처마깊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, 양곡·안허리곡·물매 등은 한옥의 지역성·개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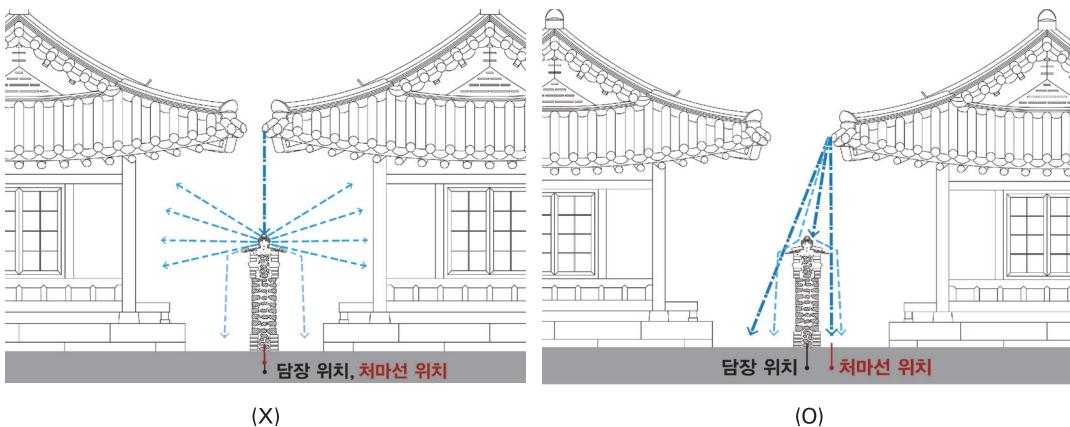
표 3. 지자체별 처마깊이 기준

(2015. 11.)

| 구분 | 지역 | 처마깊이 규정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한옥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|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| 90cm 이상(규제) |
| | 북촌 | 60cm 이상(규제) 120cm 이상(권장) |
| | 경복궁 서측 | 60cm 이상(규제) 120cm 이상(권장) |
| | 돈화문로 | — |
| | 인사동 | — |
| 한옥 수선 및 신축 가이드라인 | 서울특별시 | 최대한 확보 |
| | 성북구 | 120cm 이상(권장) |
| 지자체 한옥관련 지원조례 |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| 130cm 이상(규제) |
| | 서울특별시 외 46개 지역 | — |

- (제5조제3호) 처마물로 인한 목재의 부식·부패 및 인접대지 피해 방지
 - 「민법」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규정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, 특히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으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처마선이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
 - 본 기준에서는 인접대지의 가옥에 낙수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담장 위치를 조정하거나 지붕골 및 처마 끝에 흠통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

그림 6. 처마물 피해 방지를 위한 담장의 설치기준



■ 외벽 및 창호의 건축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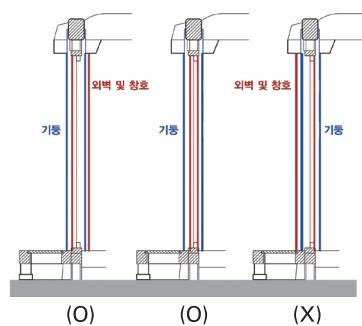
- (제6조제1호 및 제2호) 구조재 및 수장재를 노출하고, 외벽면은 그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
 - 한옥은 가구식구조로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재나 수장재가 그대로 드러나 외벽의 형태와 질감을 구성
 - 이러한 특징은 한옥의 비례와 구조의 아름다움을 드리워 뿐만 아니라 구조부재의 해체·재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, 현시대에 강조되는 장수명주택 및 탄소절감을 위한 유효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측면에서도 주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
 - 본 기준에서는 기둥, 창틀, 인방 등 목재의 구조부재 및 수장재가 노출되도록 설치하고, 회벽 등으로 덮어 가리지 않도록 함
 - 이때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여 입체적인 질감이 표현되도록 함

※ 단, 화재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과석(四塊石)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(火防壁)을 쌓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

그림 7. 전통한옥의 입면 구성(전남 담양군 무월마을)



그림 8. 외벽면의 설치기준



- (제6조제3호) 건축물의 각 층은 목재 부재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구분
 - 지하층의 일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되거나 2층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, 층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한옥 고유의 입면 비례를 해치는 문제가 종종 발생
 -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기준에서는 구조부재, 난간, 눈썹지붕, 목재 마감재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층간이 구분되도록 함

그림 9. 2층 한옥 건축사례 (좌)한옥기술개발연구단 시범한옥, (우)서울 북촌한옥마을



■ 설비의 건축기준

- (제6조제4호,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 특례 적용에 대한 에너지설계기준 마련
 - 법 제26조제5호에서 한옥은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,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
 - 하지만, 한옥의 건축에 대한 표준적인 성능지표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, 본 기준에서는 현대건축물로서 요구되는 필요성능과 현 한옥건축에서 간과하기 쉬운 고려사항을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시
 - 단열재 설치 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시공(제6조제3호),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구조 및 설비 설계(제7조제1항), 바닥난방 부위에 열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시공(제7조제2항), 냉·난방 및 조명기기 설치 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 사용(제7조제3항)하도록 규정함

그림 10.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공사례



[벽체 단열재 시공사례]

[바닥난방 온수관 시공사례]

[냉·난방기기 및 조명기기 설치사례]

- (제7조제4항) 현대건축물에서 수반되는 시설 및 설비 차폐하도록 규제

- 현대주거·생활공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수반되는 가스배관, 계량기, 에어컨 실외기 등 건축설비의 경우, 한옥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차폐하도록 규제

그림 11. 외부에 노출되는 설비의 차폐사례(서울 북촌한옥마을)



■ 마당 및 담장의 건축기준

- (제8조제2항) 가로에 면한 담장의 최고 높이기준 마련

- 한옥의 지붕이 지닌 아름다움을 가로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가로에 면한 담장은 해당 한옥의 처마선 중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 이하로 설치하도록 함
 - 단, 지하층 일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되거나 2층으로 건축하는 경우, 담장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대지가 접한 전면도로의 지표면으로부터 2.1 미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함
 - 이는 기존에 통용되던 기준에서 30센티미터 정도 상향조정한 것으로, 경사지에 위치한 한옥에서 집 안이 쉽게 들여다보이는 문제를 완화하고 거주자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

그림 12. 담장의 높이기준(서울 북촌한옥마을)



그림 13. 경사지에서 담장 설치사례(전남 행복마을 유천지구)



■ 지역 특색의 고려

- (제4조제6호, 제5조제5호) 지역적·경관적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
 - 본 기준은 전국에 지어지는 다양한 한옥에 적용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
 - 단,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별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하고, 각 지자체별 한옥진 홍정책의 전략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마련·운영할 수 있도록 함
 - 대표적으로, 한옥의 용도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전체 구조부재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재 이외의 재료 사용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(제4조제6호), 지역 및 경관 특성에 따라 기와 이외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지붕을 잇거나, 기와의 형태 및 재료, 처마깊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함(제5조제5호)

그림 14. 「한옥건축기준」의 주요 내용



3. 「한옥건축기준」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

- 관계법령 적용 및 한옥건축 관련 지원정책 운영 시 공정성 제고 및 효율성 증대
 - 「한옥건축기준」은 관계법령 적용 및 일선 한옥지원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
 - 국가차원의 공통된 법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한옥관련 지원정책의 공정성 제고
 - 한옥을 짓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설계안이 한옥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미리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관련정책 운영의 효율성 증대
- 지역적·경관적 특성을 반영한 한옥관련 진흥정책의 다양화 유도
 - 「한옥건축기준」을 기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·경관적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건축기준의 수립 유도
 - 구체적이고 특화된 지역별 한옥관련 진흥정책의 전략 모색 및 다양화 도모 예상
- 현대한옥의 발전영역 확장 및 미래상의 방향 제시
 -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매 3년마다 본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,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완하도록 함
 - 향후 건축기준의 운용실무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조건과 다양한 건축실험의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현대한옥의 미래상 제시

문의 | sjlee@auri.re.kr



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
발행인 김대익
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, 701
전화 044-417-9600 팩스 044-417-9609 www.hanokdb.kr

